

의안
번호

30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303호
제 출 자	이호건의의원 외 9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한상규

1.제안이유

○ 집행부에서의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의 기존 24시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24시간 전까지”에 토요일·공휴일 제외 (안 제5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공휴일에관한법률」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부서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4. 검토 의견

○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쇄신을 촉구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에 해당하는바.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성북구의회 구정질문 요지서 송달기한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여 송달기간 계산을 시(時)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기간의 만료점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기간계산에 포함되는 문제제가 있음

○ 이에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에서 질문요지서 송달기한을 ‘토요일 및 공휴일’의 기간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공서(내지 공무원)가 휴무하는 날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에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